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08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제220180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1
4. 검토의견	4
가. 총괄	4
나. 총칙(제1장) 관련(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7
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제2장) 관련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12
라. 공공기관이전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제3장) 관련 (안 제6조에서 제28조까지)	14
마.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제4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6장) 관련 (안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제41조에서 제49조까지)	18

I.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제220180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웅의원 등 24인

나. 발 의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2. 제안이유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혁신도시가 조성되었음.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규모·이전비용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립기준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접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제7조·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이전공공기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라. 수도권에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이전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등에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마.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9조).

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옥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지원 및 융자, 소속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이주직원에 대하여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의 지급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며, 이주직원에 대하여 주택 및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등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4. 검토의견

가. 총괄

현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임.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로서, 2007년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한 후 2019년에 153개의 공공기관 1차 이전을 완료하였음.

【 혁신도시 주요 추진 경과 】

구분	주요 내용
2003년 6월 (정책구상 발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논의 시작
2005년 6월 (이전공공기관 확정)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 혁신도시정책 본격 추진
2005년 12월 (입지선정 완료)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2007년 1월 (제도적 기반 구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년 4월 (혁신도시 지구지정)	10개 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2012년 (지방이전 개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 개시
2017년 12월 (법 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18.3.27. 시행)
2018년 2월 (시즌2 발표)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9년 12월 (지방이전 완료)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2020년 4월 (혁신도시 지정 기반 마련)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신청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시도에서 지정 신청 가능)
2020년 10월 (혁신도시 추가지정)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자료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홈페이지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¹⁾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평과 용역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의 제·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음.

동 제정안 역시 혁신도시²⁾ 건설 이후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되었음.

제정안의 내용은 혁신도시법의 조문 체계와 거의 유사하나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내에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법률과 비교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유사한 논의로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아래의 표와 같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1) 제416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24.7.10.)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 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 인구감소지역 관련 혁신도시법 개정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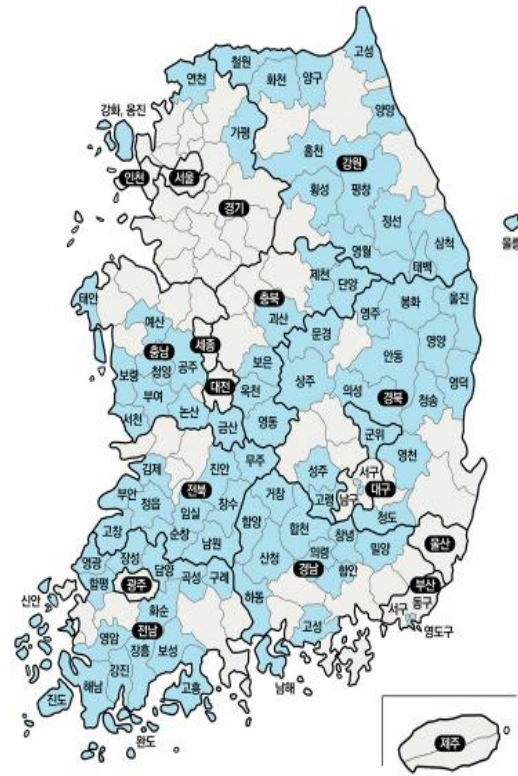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200139	허영 의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등의 분포를 고려한 지역 간의 형평성도 고려 필요
2200145	박희승 의원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 필요

나. 총칙(제1장) 관련(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u>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u>공공기관이전도시</u>"라 함은 <u>인구감소지역에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u> 4.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공기관이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10.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이 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함. 행정안전부에서 5년 단위로 지정('21.10월 최초 지정)하며 현재 89개의 지역이 지정되어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인구감소지역 지정)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외 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소멸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시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혁신도시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임.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 새로운 거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한편, 지방분권균형발전법⁴⁾ 및 혁신도시법⁵⁾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현행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음.

아울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5조⁶⁾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혁신도시의 지정⁷⁾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는 등, 혁신도시법 역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⁸⁾인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 심사 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내용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에 앞서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률 제정 대신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사항을 기존 혁신도시법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하 생략)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나, 공공기관 이전 원칙 변경 시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기존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제2장) 관련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제 정 안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정안 제2장은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혁신도시법과의 차이점은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대한 승인 및 취소, 부지의 양도제한, 건축물 양도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미규정되어 있다는 것임.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지역 거점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제정안의 공공기관이전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단순한 공공기관만의 이전보다는 관련 기업·대학·연구소가 함께 이전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것이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제정안 심사 시 공공기관이전도시에 입주하는 기관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라. 공공기관이전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제3장) 관련
(안 제6조에서 제28조까지)

제정안 주요 조문
제6조(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 <u>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 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u>한다. ②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u>생활 및 교통 인프라</u> 2. <u>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u> 3. <u>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u> 4. <u>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u>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u>이전공공기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로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별이전을 위한 업무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u>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u>

제정안 주요 조문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정안 제3장은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등에 관한 사항이며,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교육재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부분은⁹⁾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정안 제6조의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경우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이 목적으로, 혁신도시법과 달리 ①생활 및 교통 인프라, ②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 ③해당 지역의 주민참여도,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구체화하고 있는데,

9) 혁신도시법 중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관련 사항은 제정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내의 기존 인프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전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생 각됨.

또한,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 제25조제1항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¹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음.

이는, 학업 이후 지역으로 재유입되어 일하는 이른바 ‘유턴 인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인력 풀을 확대함과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지역으로 재유입시킴으로써 공공기관이전도시의 정주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¹¹⁾·공공기관 채용 등에 도입되어 있음.

특히, 교육부 소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2024. 8. 14. 시행)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었으므로¹²⁾ 제정안 심사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이전도시를 새로이 조성하는 것은 기존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지역대학 등 폭넓은 의견수렴¹³⁾을 거쳐 도입되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3, 제23조의4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당초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도입(2018년) 시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협의(총15회)를 거쳐 결정됨[(‘17.6~10, 8회), 지자체(‘17.6~10, 3회), 전문가·대학 등(‘17.8~10, 4회)]

마.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제4장) 및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6장) 관련(안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제41조에서 제49조까지)

제정안 주요 조문
제29조(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u>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전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전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4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42조(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전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장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이전도시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며,

제정안 제6장은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혁신도시법과 달리 공공기관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에 대한 지원¹⁴⁾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

1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게 되는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¹⁵⁾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혁신도시법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지원체계와 구조적 차이는 없으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원칙이 결정될 경우 원칙에 맞게 특별회계 설치 및 공공기관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81

1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